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12월 20일

- 회부일자 : 1994년 12월 20일

3. 개정이유

동 조례가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바, 청주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의 건설부 승인사항과 청주신산업기술도시의 내무부 승인사항의 명칭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명칭을 개정하고 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한 건설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현재의 업무기능이 테크노밸리 업무만 전담도록 되어 있으나 충청북도의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주도하는 전담기구로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면서 기구 존치년한을 94년 말에서 96년 말까지 연장 요청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기에 개정코자 하는것임.

4. 주요골자

조례명이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로 된 것을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설치조례"로 하고,

· 과학단지의 건설 전담기구 명칭도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에서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으로 개칭하며,

- 업무의 기능도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사업"에서
"과학산업단지건설사업"으로 하고,
- 건설협의회 운영규정 신설과 운영위원의 회의 참석 실비보상 지급 규정을 명문화
하며,
- 부칙의 유효기간도 "1994년 12월 31일까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5. 검토의견

청주신산업기술도시의 명칭을 우리도의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주체를 쉽게 인지
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한 건설
협의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재의 전담업무도 충청
북도의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하는 전달기구로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면서 기구 존치연한을 '94년말에서 '96년말까지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득하였기에 동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따로 볼 임"

- 볼 임 : 개정조례안 1부.